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0
----------	-----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반영

나. 정의, 장사문화 개선 등 용어 수정(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호, 제5조, 제24조, 제27조)

“공설묘지”, “화장·납골”을 “공설묘원”, “화장·봉안”으로 변경함.

다. 공설묘원 모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사용자 자격 범위 확대 및 용어 수정(안 제10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의 반환 규정 신설(안 제17조)

바. 평창군 공설묘지 표에 종류 추가 및 명칭, 위치, 면적 수정(안 별표1)  
 공설묘지에서 공설묘원으로 명칭변경. 시설의 종류를 공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봉안시설에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를 포함하는 등 현 시설에 맞게 수정함.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사. 평창군 공설장사시설 표에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추가 등  
 (안 별표2) -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 사용료, 관리비 등을 추가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2. 8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764호, 가족복지과-44805(2025. 12. 5.)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9136(2025. 12. 4.)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9136(2025. 12. 4.)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44814(2025. 12. 7.)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346(2026. 1. 6.)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614(2026. 1. 8.)호]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설공원묘지”라 함은”을 ““공설묘원”이라 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사시설중”을 “장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설 공원 공동묘지”를 “공설묘원· 공동묘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장· 납골”을 “화장· 봉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장소중**”을 “**장소 중**”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100미터이상**”을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은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붕괴우려**”를 “**붕괴 우려**”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제목 “(**분묘의 설치기간**)”을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분묘를**”을 “**분묘 및 봉안을**”로, “**합장 분묘**”를 “**합장 분묘 및 봉안**”으로 한다.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사망한 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를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봉안 시설에 안치되는 자”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으로,

“동시에 안치하는”을 “합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안시설에 안치되는 자**”를 “**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으로, “**인접한 방안 시설**”을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방안시설**”을 “**방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방안시설**”을 “**방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연고자가 주민등록 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방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9. 가족방안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하여 안치가 가능하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1개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아니 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을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이하‘사용료 등’**”을 “**이하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감면 할 수 있다”를 “전액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기등”을 “장기 등”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호 중 “변경 된”을 “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 전”을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하기 3개월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를 “제2항에 따른 개장 시”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명 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골을”을 “사용자는 유골을”로 하며, “때에는 원상복구에”를 “때 군수는 원상복구에”로 하고, “개장 할”을 “개장할”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중 “공설장사시설내”를 “공설장사시설 내”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다 하여야”를 “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 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반 하였”을 “위반하였”으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업소”를 “평창군 공설 묘원 관리사업소”로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1항 중 “심의 · 정하기”를 “심의 · 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 조정 한다”를 “심의 · 조정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공원 내의 금지 행위)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8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묘적부등)”을 “(묘적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납골부”를 “봉안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공설묘지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봉안당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읍·면(마을)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평창읍 공동묘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둔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둔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주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항리 산 78번지	2,083
미탄면 공동묘지	미탄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탄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탄면 울치리 산 59번지	3,273
	미탄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탄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명 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방림면 공동묘지	방림면 방림리 산 145번지	1,785
대화면 공동묘지	대화면 상안미2리 산 571-1번지	5,488
봉평면 공동묘지	봉평면 평촌2리 산 40번지 봉평면 유포2리 산 398번지 봉평면 흥정리 산 13번지 봉평면 유포1리 산 89번지 봉평면 원길1리 산 249-1 봉평면 덕거2리 산 173번지	19,834 9,917.4 7,240 5,355 14,876 19,834
용평면 공동묘지	용평면 속사2리 산 128-1 용평면 노동리 산 175번지 용평면 백옥포리 산 28번지	14,281 3,372 2,642
진부면 공동묘지	진부면 하진부5리 산 3번지 진부면 하진부6리 산 16번지 진부면 상진부2리 산 27번지 진부면 송정2리 산 309번지 진부면 두일리 산 66번지 진부면 거문리 산 84번지 진부면 신기리 산 23번지 진부면 마평리 묘지 37번지	24,793 46,017 8,179 14,083 11,207 7,676 3,669 5,928
대관령면 공동묘지 <개정 2006.7.7 : 시행일 2007.9.1>	대관령면 용산리 산 229번지 <개정 2006. 7. 7: 시행일 2007.9.1>	3,305.8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 평창군 공설묘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공설묘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당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 읍·면(마을) 공동묘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 용 료	관 리 비
분 묘 (매 장)	단 장		4,000	4,000	-
	합 장		6,000	6,000	-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7조 관련)**

사용경과기간	환급기준	비고
1년 미만	사용료 등의 70%	
1년 이상 ~ 3년 미만	사용료 등의 50%	
3년 이상 ~ 5년 미만	사용료 등의 40%	
5년 이상 ~ 7년 미만	사용료 등의 20%	
7년 이상 ~ 10년 미만	사용료 등의 10%	
10년 이상	환급 없음	

※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장사시설	공설묘지 (단장, 합장)		단지	단	번
	가족봉안묘		단지	단	번
	봉 안 담 (단장, 합장)		-		-
	봉 안 당 (단장, 합장)		-		-
사망자	성명		성	별	
	생년 월일		사	용	연 월 일
신청자	성명		사	망	자 와 관 계
	생년 월일		연	락	처
	주소				
금액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p>「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관리비)을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설묘역시설 신고필증 1부</li> <li>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3. 통장사본 1부</li> </o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사등에 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u>사항과</u> <u>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 ----- ----- - <u>운영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장사시설”이라 <u>함은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u>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p> <p>2. “<u>공설공원묘지</u>”라 함은 <u>평창군</u>(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p> <p>3. “<u>공설공동묘지</u>”라 함은 <u>장사 시설중</u>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p> <p>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p>	<p>제2조(정의) ----- -----.</p> <p>1. ----- <u>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u> ----- -----.</p> <p>2. “<u>공설묘원</u>”이라 함은----- ----- -----.</p> <p>3. ----- <u>장사 시설 중</u> ----- ----- ----- -----.</p> <p>4. ----- -----</p>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  
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  
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  
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  
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  
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  
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 안  
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 3.·4. (생략)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  
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특별  
자치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  
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

----- 공설묘원·  
공동묘지-----  
-----  
-----  
-----  
-----.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  
-----  
-----  
-----  
-----.

1. --- 구역 안-----  
-----
2. 화장·봉안-----  
-----  
-----
- 3.·4. (현행과 같음)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  
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역 안-----  
-----.

② 제1항에 따라

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2. (생략)

② 영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

-----  
-----  
-----  
-----  
-----  
-----  
-----.

③ -----구역 안  
-----  
-----  
-----.

제5조(개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봉안시설 -----  
----- 장소 중 -----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향평가 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년 이내-----  
-----  
-----

3. -----  
---- 붕괴 우려 -----  
-----

제7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30년 1회 연장 후 15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②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30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분묘, 봉안담, 봉안당, 가족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

봉안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분묘 및 봉안을 -----  
-----  
----- 합장 분묘 및 봉안 -----  
-----.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10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사망한 사람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

3.·4. (생략)

5.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6.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시설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

7.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8. 군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신설>

2. -----  
평창군 공설묘원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사람

3.·4. (현행과 같음)

5.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사람-----  
-- 합장하는 -----

6. ----- 공설묘원에 안치 또는 매장되는 사람-----  
합장하기 위해 인접한 시설-----

7. -----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8. -----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타 시설에 있던 유골함은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에만 안치가 가능하다.

9. 가족봉안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정하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제11조(묘지의 면적)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기본 점유면적은 6.75제곱미터(1.5m×4.5m)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분묘의 구조등) 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한다.

② 분묘의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안치가 가능하다.

10. -----

-- 사람-----

<삭제>

<삭제>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  
----- 사람은  
-----.

② ----- 각호의 어느 하나  
-----  
-----.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  
각호의 어느 하나-----  
-----.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  
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  
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 ----- 1개월 이내  
----- 사유 없이 -----  
----- 아니한 -----

2. ----- 제7조에 따른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  
-----  
-----

<삭 제>

제16조(사용료 등) ① -----  
-----이하 “사용료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생략)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 설>

제1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장기 등 -----  
-----  
-----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  
-----.

1. ----- 변경된 -----

2.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2. (현행과 같음)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치하기 3개월 전 -----  
-----  
-----.

③ 제2항에 따른 개장 시-----  
-----  
-----.

제2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  
-----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  
을 명할 수 있다.

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설장사  
시설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  
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 4. (생략)

제23조(관리사무소설치) 묘지조성과

-----  
-----  
-- 명할 -----.

② 사용자는 유골을 -----  
개장할-----  
-----때  
군수는 원상복구에-----  
-----.

제21조(위탁운영) ----- 공설장사  
시설 내 -----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  
----- 기간 중 -----  
----- 다하여야 ----.  
② ----- 관계 법령 -----  
--- 따른 -----  
-----.

제23조(위탁의 취소등) -----  
각호의 어느 하나-----  
-----  
-----.

1. -----  
----- 위반하였---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리사무소설치) -----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공설장사시설 안의 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공설장사시설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고성방가, 음주 난동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제28조(권한위임)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생략)

제29조(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공설표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군 공설표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25,678
평창군 공설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공설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 읍·면(마을) 공동표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읍 공동표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동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동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추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합리 산 78번지	2,083	
미란면 공동표지	미란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란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란면 읍치리 산 59번지	3,273
	미란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란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관련)**

□ 평창군공설표지(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분 묘 (매장)	단장 (6.75㎡)	2,000,000	1,520,000	480,000
	합장 (9.9㎡)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시설	봉안담 1구당	400,000	400,000	-
	봉안담 1구당	600,000	600,000	-

\* 사용년한 : 30년 사용기준임.

□ 읍·면(마을) 공동표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분 묘 (매장)	단장 (6.75㎡)	4,000	4,000	-
	합장 (9.9㎡)	6,000	6,000	-

[별표 1]

**평창군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9조관련)**

□ 평창군 공설표원

종 류	명 칭	위 치	면 적(㎡)
공설표지	평창군 공설표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봉안시설	평창군 봉안담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330
	평창군 가족봉안묘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663.46, 지상2층
자연장지	평창군 자연장지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 읍·면(마을) 공동표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읍 공동표지	평창읍 중리 산 1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 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 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 7번지	3,669
	평창읍 조동리 산 73번지	6,611.6
	평창읍 도동리 산 5번지	2,579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 18번지	3,967
	평창읍 후평리 산 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 4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 28번지	1,726
	평창읍 추진리 산 195번지	4,661
평창읍 용합리 산 78번지	2,083	
미란면 공동표지	미란면 창2리 산 46번지	201,813
	미란면 창3리 산 2-1번지	32,066
	미란면 읍치리 산 59번지	3,273
	미란면 평안1리 산 74-1번지	409,488
	미란면 기화리 산 43번지	4,463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 평창군 공설표원(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36)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공설표지 (매 장)	단 장	2,000,000	1,520,000	480,000	
	합 장	3,000,000	2,280,000	720,000	
봉안 시설	봉안담	단 장	400,000	400,000	-
		합 장	800,000	800,000	-
	봉안담	단 장	600,000	600,000	-
		합 장	1,200,000	1,200,000	-
	가족봉안묘	봉안묘	3,000,000	2,280,000	720,000
자연장지	단 장	400,000	240,000	160,000	
	합 장	600,000	340,000	260,000	

□ 읍·면(마을) 공동표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분 묘 (매 장)	단 장	4,000	4,000	-
	합 장	6,000	6,000	-

<신 설>

<신 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7조 관련)

사용경과기간	환급기준	비고
1년 미만	사용료 등의 70%	
1년 이상 ~ 3년 미만	사용료 등의 50%	
3년 이상 ~ 5년 미만	사용료 등의 40%	
5년 이상 ~ 7년 미만	사용료 등의 20%	
7년 이상 ~ 10년 미만	사용료 등의 10%	
10년 이상	환급 없음	

※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장사시설	공설묘지 (단장, 합장)	단지 단 번	
	가족봉안묘	단지 단 번	
	봉안당 (단장, 합장)	- -	
사망자	성명		성 별
	생년 월일		사용연월일
신청자	성명		사망자와 관 계
	생년 월일		연 락 처
	주소		
금액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p>「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관리비)을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p>1. 공설묘역시설 신고필증 1부</p> <p>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3. 통장사본 1부</p>			

# 관계법령 발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 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가. 평창공설묘원 시설비(구축물)

- 자연장지 조성 47,800천원 ※ 5개년 소요 예상 총사업비

→ 잔디 시공  $800\text{m}^2 \times 10,500\text{원} \times 2\text{단} = 16,800\text{천원}$

→ 추모로 설치  $250\text{m}^2 \times 62,000\text{원} \times 2\text{단} = 31,000\text{천원}$

- 가족봉안묘 기초공사 2,000,000원  $\times 20\text{기} = 40,000\text{천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연락처	(033) 330 - 2124